



2024년 정기이사회 회의록

- 제205차 -

【개최일시】 2024년 2월 20일(화) 16:00

【개최장소】 서울대교구청 별관 1층 대회의실

【참석인원】 이사 7명(정원 9명) / 감사 2명(정원 2명)

출석이사: Fr. 정진호, 오혜경, 심점섭, 전재희, 정태호, 김명근, 김영주 (7명)

출석감사: Fr. 김한석, 오윤숙 (2명)

배석: 사회사목국 국장 Fr. 윤병길, 사회사목국 부국장 Fr. 하성용,

법인 부회장 Fr. 김원호, 법인사무국 담당관 7명

【의안상정】

제1호 의안 법인 「감사보고서」 승인 요청의 건

제2호 의안 법인 산하 「정관」 변경(안) 승인 요청 심의의 건

※ 법인 직영 “카페 생 마리 Cafe. St. MARY” 사업취지 관련

제3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수탁 노인복지시설 「운영규정」 개정 변경(안) 승인 요청 심의의 건

1. 「서울가톨릭노인요양시설 공통운영규정」 제3차 개정(안)

2. 「데이케어센터 공통운영규정」 제3차 개정(안)

제4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 장애인복지시설 「나자로의집 보호작업장」 폐지 및 설치 예정일 (안)
승인 요청 심의의 건

제5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수탁 영·유아복지시설 2023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심의의 건

제6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3년 사업총평가 및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
청 심의의 건

제7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수탁 영·유아복지시설 2024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요청 심의의 건

제8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4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
청 심의의 건

제9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적격자 선정(안) 승(추)인 요청 심의의 건

제10호 의안 법인 「임원, 선임(안)-이사·감사— 승인 요청 심의의 건

【보고 및 기타 토의 사항】

【파회】

□ 개회 정족수 보고 및 개회 선언

의장은 오후 4시 상임이사의 정족수 보고를 들은 후, 시작기도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정관」 제19조 제2항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으로 개회를 선언하다.

※ 대표이사의 유고(병환) 상황으로 법인 「정관」 제17조 제2항 근거하여 “대표이사 유고시 상임이사가 대행한다.”는 조항에 따라 본 회의를 상임이사가 대행하여 진행함.

□ 의장 인사 말씀

법인 정기이사회 참석을 위해 바쁜 일정 중에도 함께 해주신 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갑진년 새해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기이사회에서는 “법인 감사보고서, 법인과 산하 직영·수탁시설의 2023년 사업총평가와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 등, 총 10건의 상정 의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전차 이사회의록 확인

의장은 출석이사에게 전차회의록에 대한 보완·수정할 부분의 유무를 묻고 출석이사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전차 회의록을 확정시키다.

의안 심의

■ 제1호 의안 : 법인 「감사보고서」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정진호 : 제1호 의안은 법인 「감사보고서」 승인 요청의 건으로 법인의 2023 회계연도 감사 내용을 “오윤숙 감사”께서 대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 감사 오윤숙 : “법인 「감사보고서」, 본인 등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집행 내용과 2023년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 내용과 결산서는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의장] 법인의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오윤숙 감사님과 김한석 감사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임원분들께서는 제1호 의안에 대하여 특이사항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란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1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정으로 제1호 의안인 법인 「감사보고서」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며 이사진은 법인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2명의 감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

■ 제2호 의안 : 법인 「정관」 변경(안) 승인 요청 심의의 건

-법인 직영 "카페 생 마리 Cafe. St. MARY" 사업운영 관련-

- ◎ 의장 정진호 : 제2호 의안인 법인 「정관」 변경(안)-법인 직영 "카페 생 마리 Cafe. St. MARY" 사업운영-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원호 부회장신부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 ◎ 부회장 김원호 : 제2호 의안인 법인 「정관」 변경(안)-법인 직영 "카페 생 마리 Cafe. St. MARY" 사업운영-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법인 「정관」 변경(안)

▣ 변경 대상: 「정관」 본문 제7장 수의사업 제30조(수의사업) 수의사업 추가

▣ 변경 내용:

현 행	변경(안)	변경 사유
제30조 (수의사업) 이 법인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의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0조 (수의사업) 이 법인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의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신설] 제30조(수의사업) 수의사업으로 <u>'카페운영'</u> 사업 추가 ※ 상세 내용은 「정관」 변경 사유 및 '사업취지' 참조
1. 부동산임대업	1. 부동산임대업 2. 카페운영	

▣ 변경 사유:

1.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부설 '만남의 빙' 「카페 생 마리(Cafe St. MARY)」(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명동2가))는 지난 2020년경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지 3년이 경과된 상황임.
2. 이에, 사용 중단된 위 공간을 본 법인 산하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활달장애인들에게 자립을 위한 직업훈

현과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카페를 운영하고자 내부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나아가 교회의 사랑실천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함.

- 위 공간 활용에 대해 성당 측과 논의한 바, 임차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발달장애인들이 근로자로서 참여하는 카페를 본 법인의 지점(※ 업태: 휴게음식점 / 종목: 카페)으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사회 의 승인을 요청함.

※ “사업취지”-이하 내용 참조

※

[의안 보고를 마친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2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란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2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정으로 제2호 의안인 법인 「정관」변경(안)-법인 직영 “카페 생 마리 Cafe, St. MARY”사업운영-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3호 의안 : 법인 산하 직영·수탁 노인복지시설 「공통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건 심의

1. 서울가톨릭노인요양시설 공통운영규정 3차 개정(안)
2. 데이케어센터 공통운영규정 3차 개정(안)

◎ 의장 정진호 : 제3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 노인복지시설 「공통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원호 부회장신부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 부회장 김원호 : 제3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 노인복지시설 「공통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건으로 본 의안은 자료는 법인 변호사님의 자문과 김의석 법인 자문 노무사님(노무법인 사람 소속)의 사전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되었음을 안내드리며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1. 「서울가톨릭노인요양시설 공통운영규정」 제3차 개정(안)

▣ 제·개정 경과

1. 「서울가톨릭노인요양시설 공통운영규정」 제정(법인 임시이사회 승인, 2012년 6월 19일)
2. 제1차 개정(법인 임시이사회 승인, 2015년 10월 28일)
3. 제2차 개정(법인 정기이사회 승인, 2018년 2월 23일)

▣ 개정 사유

1.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직영·수탁시설 운영규정」 제13조 삭제 반영
2. 「노인복지법」 제6조의 3(인권 교육) 제1항 반영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제2항 반영
4.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제3항 반영

▣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인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임용권의 행사) 일부 조문 변경 및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직영·수탁시설 운영규정」 제13조 삭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3조(교육훈련의 종류) 일부 조문 변경 및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제1항 반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제2항 반영
운영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일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제3항 반영

* 이하, 개정(안) 본문 참조.

「인사규정」 개정(안) 본문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4조(임용권의 행사) 시설장은 부장(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에 대해서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권을 행사한다.	제4조(임용권의 행사) 시설장은 부장(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에 대해서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권을 행사한다.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직영·수탁시설 운영규정」 제13조(실무책임자(부장/사무국장)의 임면) 삭제 반영
제8장 교육 훈련	제8장 교육 훈련	
제43조(교육훈련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원교육은 신입직원교육, 소양교육,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신입직원교육은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지식 및 태도를 습득케 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③ 소양교육은 직원의 자기 성장을 통해 직장인의 자세확립과 직원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④ 보수교육은 직원의 직능별 전문성 향상(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도입)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제43조(교육훈련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원교육은 신입직원교육, 소양교육, 보수교육, 법정의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신입직원교육은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지식 및 태도를 습득케 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③ 소양교육은 직원의 자기 성장을 통해 직장인의 자세확립과 직원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④ 보수교육은 직원의 직능별 전문성 향상(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도입)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경 ·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제1항 반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제2항 반영 ※ 법정의무교육 실시의 명확화

「인사규정」 개정(안) 본문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p>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p> <p>⑤ 법정의무교육은 노인인권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신설)</p>	

「운영위원회」 개정(안) 본문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p>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p> <p>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p> <p>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p> <p>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p> <p>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p> <p>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p> <p>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p> <p>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p> <p>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②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p> <p>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p> <p>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p>	<p>[추가]</p> <p>* 제3조(위원회의 기능) 일부 추가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제3항 반영</p>

2. 「데이케어센터 공통운영규정」(구 본당데이케어센터 공통운영규정) 제3차 개정(안)

▣ 제·개정 경과

1. 「본당데이케어센터 공통운영규정」 제정(법인 임시이사회 승인, 2016년 1월 13일)
2. 제1차 개정(법인 정기이사회 승인, 2019년 2월 20일)
3. 제2차 개정(법인 임시이사회 승인, 2020년 5월 14일)

▣ 개정 사유

1. 규정 명칭 「본당데이케어센터 공통운영규정」에서 「데이케어센터 공통운영규정」으로 변경.
: 병설 데이케어센터까지 확장하여 포함.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제18조의 3(난임 치료 휴가),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 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등 반영.
3.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6조(해고의 예고),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등 반영.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등 반영.
5.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및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반영.

▣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인사· 복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일부 조문 변경 ⇒ 인사위원회 구성인원을 기존 3명 → 3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변경■ 제10조(채용원칙) 일부 조문 변경 및 추가 ⇒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 39) 공개모집,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내용 반영■ 제15조(근로계약) 일부 조문 변경 및 추가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반영■ 제22조(직무대리 및 겸직) 일부 조문 변경 ⇒ 재정 및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 변경■ 제24조(호봉의 확정 및 인정범위) 일부 조문 추가 ⇒ 호봉 확정 시 1년 미만 경력에 대한 반영 방법 및 시기 명시 추가■ 제36조(유급 휴일) 일부 조문 변경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제57조(보상 휴가제), 시행령 제30조(휴일) 반영■ 제37조(연차유급 휴가) 일부 조문 추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개정 사항 반영하여 제5항 내용 추가■ 제39조(경조사휴가) 일부 조문 변경 및 추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제12조 제1항 반영■ 제41조 1(난임치료의 휴가) 신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난임치료 휴가) 개정 반영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조(임산부의 보호) 일부 조문 변경 및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반영 ■ 제44조(육아기 근로 단축) 일부 조문 추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3항 개정 반영 ■ 제46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의 사용 형태) 일부 조문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반영하여 제목과 일부 조문 변경 ■ 제52조 (해고의 통지) 일부 조문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반영하여 단서 조항 구체화 ■ 제56조 (징계의 사유) 일부 조문 변경 및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의 사유 구체적 명시 ■ 제57조 (징계의 종류 및 처벌 기준) 제목과 일부 조문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과 일부 조문 변경 ■ 제63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 방법) 제목 변경 및 일부 조문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개정 반영 제4호 추가 ■ 제69조 (성희롱의 예방 및 조치) 일부 조문 변경 및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의 의무 사항 반영 ■ 제70조 (직무교육) 일부 조문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상황에 맞게 일부 조문 변경 ■ 제80조 (복리후생) 조문 변경 및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리후생의 범위 구체화
운영위원회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및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근거하여 일부 내용 변경 및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조(회의) 제목 수정 및 일부 내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II.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 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을 근거로 전자적 회의 내용 반영
재무회계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등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조(예비비) 일부 내용 추가

구분	주요 내용
	<p>→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에 근거하여 내용 추가</p> <p>제16조(특정목적사업예산) 일부 내용 추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8조(특정목적사업예산), 제3항 개정 반영</p> <p>제39조(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일부 내용 추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3항 반영</p>

* 이하, 개정(안) 본문 참조.

「데이케어센터 공통운영규정」 명칭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본당데이케어센터 공통운영규정	 본당데이케어센터 공통운영규정	<p>[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당데이케어 센터 외 병설 데이케어 센터 까지 규정 적용 포함.

「인사·복무규정」 개정(안) 본문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제2장 인사위원회</p> <p>제6조 (인사위원회의 구성)</p> <p>①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시설장 위원: 직군별(행정직, 간호직, 요양직, 기능직 등) 1인으로 하며 해당직군의 선임직원을 당연직으로 위촉 간사: 위원장이 위원 중 위촉 심의 대상자가 위원이거나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일 경우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항으로 인하여 제1항의 구성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해당 직군의 차선임자가 의결에 참여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제2장 인사위원회</p> <p>제6조 (인사위원회의 구성)</p> <p>① 인사위원회는 3명 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변동 없음. 위원: 중간관리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직원 변동 없음. ②~④ 변동 없음.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규모와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인원을 기존 3명→3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변경

「인사·복무규정」 개정(안) 본문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2장 인사위원회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3장 채용 및 근로계약	
<p>제10조 (채용원칙)</p> <p>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수행에 특수한 자격과 기술이 필요하여 공개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건강악화 등 일신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였던 직원을 재 채용하는 경우 <p>② 공개경쟁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순으로 실시한다.</p> <p>③ 공개채용을 위하여 법인과 시설의 홈페이지, 직업안정기관의 구인홈페이지, 직능별 협회 홈페이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p>	<p>제10조 (채용원칙)</p> <p>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전제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할 수 있다.</p> <p>[전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에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법인의 임원, 운영자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기준을 충족시킬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시설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시설이 통합되는 경우나 시설 위·수탁 계약에 따라 종전 종사자의 고용 관계를 승계하는 경우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직한 직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용된 경우로서, 그 고용의 원인이 된 출산·육아 휴직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라 해당 대체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등 <p>② 변동 없음.</p> <p>③ 공개채용을 위하여 법인 또는 시설의 홈페이지를 제외한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희망 이음 중 2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 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다. 단,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 기간을 자체 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p>	<p>[변경]</p> <p>■ 「2024 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 (p. 39) 공개모집,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내용 반영</p>
<p>제15조 (근로계약)</p> <p>① 시설은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1부씩 보관한다.</p> <p>②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업무내용, 근무</p>	<p>제15조 (근로계약)</p> <p>① 시설장은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1부씩 보관한다.</p> <p>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기간</p>	<p>[변경]</p> <p>■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반영</p>

『인사·복무규정』 개정(안) 본문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2장 인사위원회	제2장 인사위원회	
<u>장소, 소정근로시간, 휴일, 임금의 구성항목·산정방법·지급방법,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 내용은 「취업규칙」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장 배치	제5장 배치	
제22조 (직무대리 및 겸직) ① 시설장은 필요에 따라 직원을 직제 상 상위 직의 직무대리자로 발령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 요건이 해소될 때에는 원직으로 환원한다. ③ 직무대리 기간 중에는 직무에 상응하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④ 관계법에 따라 인력가산이 적용되는 직원은 타 직무에 겸직시킬 수 없다.	제22조 (직무대리 및 겸직) ①~② 변동 없음. ③ 직무대리 기간 중에는 직무에 상응하는 직책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변동 없음.	[변경] ■ 시설별 재정 및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한다.'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
제6장 승급과 승진	제6장 승급과 승진	
제24조 (호봉의 확정 및 인정범위) ①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② 호봉에 산입할 수 있는 근무경력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 따르며, 경력이 확인된 해당 월부터 적용한다.	제24조 (호봉의 확정 및 인정범위) ①~② 변동 없음. ③ 초임호봉의 확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추가] ■ 호봉 확정 시 1년 미만 경력에 대한 반영방법 및 시기 명시 추가
제9장 휴일과 휴가	제9장 휴일과 휴가	
제36조 (유급 휴일) ①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의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해당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36조 (유급 휴일) ① 변동 없음. ② 근로자의 날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휴일에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변동 없음.	[변경 · 추가]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7조(보상 휴가 제) 반영하여 내용 변경 및 추가

「인사·복무규정」 개정(안) 본문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2장 인사위원회	제2장 인사위원회																																							
<p>③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④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때에는 주휴일만 인정하며,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무급휴무일만 인정한다.</p>	<p>⑤ 시설은 제1항과 제2항(근로자의 날 제외)의 휴일 또는 휴무일을 대신하여 근로일과 휴일 대체를 할 수 있다. 다만, 휴일 대체를 하는 경우 사전에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다. (신설)</p> <p>⑥ 제3항의 휴일근로를 행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수당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전에 보상휴가제 도입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다. (신설)</p>																																							
제37조 (연차유급휴가)	제37조 (연차유급휴가)	[추가]																																						
<p>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p> <p>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p> <p>③ 삭제 <2019. 2. 20.></p> <p>④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p>	<p>①~④ 변동 없음.</p> <p>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신설)</p>	<p>■ 「근로기준법」 6조 개정사항 반영하여 제5항 내용 신설 추가</p>																																						
제39조 (경조사 휴가)	제39조 (경조사 휴가)	[변경, 추가]																																						
<p>① 시설은 직원에게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일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결혼</td> <td>본인</td> <td>5일</td> <td>-</td> </tr> <tr> <td>자녀</td> <td>1일</td> <td></td> </tr> <tr> <td rowspan="2">출산</td> <td>배우자</td> <td>10일</td> <td>-</td> </tr> <tr> <td>사망</td> <td>배우자</td> <td>5일</td> <td>당일</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일수	비고	결혼	본인	5일	-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	사망	배우자	5일	당일	<p>① 시설은 직원에게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일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결혼</td> <td>본인</td> <td>5일</td> <td>-</td> </tr> <tr> <td>자녀</td> <td>1일</td> <td></td> </tr> <tr> <td rowspan="2">출산</td> <td>배우자</td> <td>10일</td> <td>-</td> </tr> <tr> <td>사망</td> <td>배우자</td> <td>5일</td> <td>당일</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일수	비고	결혼	본인	5일	-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	사망	배우자	5일	당일	<p>■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전문 12조 1항 반영</p>
구분	내용	일수	비고																																					
결혼	본인	5일	-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																																					
	사망	배우자	5일	당일																																				
구분	내용	일수	비고																																					
결혼	본인	5일	-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																																					
	사망	배우자	5일	당일																																				

「인사·복무규정」 개정(안) 본문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2장 인사위원회		제2장 인사위원회																					
<table border="1">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5일</td><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포 함</td></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td><td>2일</td><td></td></tr> <tr> <td>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td><td>2일</td><td></td></tr> </table>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포 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2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2일		<table border="1">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5일</td><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포 함</td></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td><td>2일</td><td></td></tr> <tr> <td>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td><td>3일</td><td></td></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신설)</td><td>1일</td><td></td></tr> </table>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포 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2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신설)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포 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2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포 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2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신설)	1일																						
<p>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는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휴기일수를 계산하며 휴기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휴기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휴기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되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휴일 또는 휴무일을 휴기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p> <p>③ 제1항 각 호의 휴가와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휴일로 취급하며,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무급휴무일로 취급한다.</p> <p>④ 휴가를 얻고자 하는 직원은 제1항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④ 변동 없음.</p>																						
신설	<p>제41조 1 (난임치료의 휴가)</p> <p>①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②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직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p>	<p>[신설]</p> <p>■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개정 사항 반영 신설,</p>																					
제10장 모성 보호	제10장 모성 보호																						
<p>제42조 (임산부의 보호)</p> <p>①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들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p>	<p>제42조 (임산부의 보호)</p> <p>①~⑨ 변동 없음.</p> <p>⑩ 시설장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p>	<p>[추가]</p> <p>■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반영하여 제10항 신설 추</p>																					

「인사·복무규정」 개정(안) 본문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2장 인사위원회	제2장 인사위원회	
<p>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관계법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p> <p>③ 제1항,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④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관계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 한다.</p> <p>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p> <p>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 까지</p> <p>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까지</p> <p>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 까지</p> <p>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 까지</p> <p>⑤ 시설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법이 정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관계법에 따라 지금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시설은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 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p> <p>⑦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시킨다.</p> <p>⑧ 시설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p>	<p>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p>	가

「인사·복무규정」 개정(안) 본문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2장 인사위원회	제2장 인사위원회	
<p>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p> <p>⑨ 시설은 제8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4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p> <p>① 시설은 제27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관계법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시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시설이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u>30시간</u>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p> <p>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p> <p>⑤ 시설은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관계법이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p>	<p>제44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p> <p>①~② 변동 없음.</p> <p>③ 시설이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u>35시간</u>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p> <p>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27조에 정한 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신설)</p> <p>⑤ 변동 없음.</p>	<p>[변경·추가]</p> <p>■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3항 개정 반영(30시간 → 35시간), 제4항 단서조항 신설 추가</p>
<p>제46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방법)</p> <p>① <u>직원은 제27조와 제44조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u></p>	<p>제46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p> <p>① <u>직원은 제27조(육아휴직)와 제4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는 다음과 같다.</u></p> <p>1. <u>직원은 육아휴직을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u></p>	<p>[변경]</p> <p>■ 조 제목 변경</p> <p>■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 휴직과 육아기</p>

「인사·복무규정」 개정(안) 본문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2장 인사위원회	제2장 인사위원회	
<p><u>1. 육아휴직의 1회 사용</u></p> <p><u>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u></p> <p><u>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 한도)</u></p> <p><u>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 한도)</u></p> <p><u>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u></p> <p>② 직원은 제27조의 휴직을 사용하거나 제44조에 따른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30일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육아휴직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부여한 총 휴직 일수를 넘길 수 없다.</p>	<p>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 한도)</p> <p>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 한도)</p> <p>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p> <p>②~③ 변동 없음.</p>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 제1항 개정 반영하여 1항 각호 내용 변경
<p>제11장 퇴직 및 해고</p> <p>제52조 (해고의 통지)</p> <p>① 시설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p> <p>② 시설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관계 법에서 예외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장 퇴직 및 해고</p> <p>제52조 (해고의 통지)</p> <p>① 변동 없음.</p> <p>② 시설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신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신설)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신설) <p>③ 시설장이 제2항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p>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반영하여 단서 조항 구체화

「인사·복무규정」 개정(안) 본문

현재	개정(안)	개정 사유
제2장 인사위원회	제2장 인사위원회	
제12장 포상 및 징계	제12장 포상 및 징계	
<p>제56조 (징계의 사유)</p> <p>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설의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③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경우 ④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시설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경우 ⑤ 기타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징계에 처하는 것이 적합하고 인정되는 경우 	<p>제56조 (징계의 사유)</p> <p>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변동 없음. ② 시설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③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시설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경우 ④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시설에 피해를 입힌 자 ⑤ 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경우 ⑥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신설) ⑦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의 물품이나 금품을 반출한 경우(신설) ⑧ 직장 내 평화통 행위를 한 경우(신설) 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신설) ⑩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안전보건 질서를 위반한 경우(신설) ⑪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신설) 	<p>[변경·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수정 및 제 6항~제11항 신설하여 징계의 사유 구체적 명시 및 추가
<p>제57조 (징계의 종류 및 처벌 기준)</p> <p>직원이 제56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견책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시설장의 직권으로 가능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견책: 시말서를 받고 시설은 문서로 경고한다. ② 감봉: 6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되, 1회에 평균임금 1일 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삭감한다. ③ 정직: 3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되, 해당 기간 동안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p>제57조 (징계의 종류 및 처벌 기준)</p> <p>직원이 제56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견책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시설장의 직권으로 가능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견책: 경위서를 받고 시설은 문서로 경고한다. ②~③ 변동 없음. ④ 정직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7조 제목 변경, 제1항 용어 수정, 제4항 용어 수정

「인사·복무규정」 개정(안) 본문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2장 인사위원회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징계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13장 임금 제63조 (임금의 정산일 및 지급일)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00일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임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시설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 지급기일 및 정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임금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③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결근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장 임금 제63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 방법) ①~③ 변동 없음. ④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의 총액,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지급일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한다. (신설)	[추가]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임금 대장의 기재사항) 개정안 반영 제4항 신설 추가
제14장 고충처리위원회 및 성희롱 예방 제69조 (성희롱의 예방 및 조치) ① 시설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모든 직원은 관계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은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게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시설은 피해 직원이 원하지 않을 시 처리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4장 고충처리위원회 및 성희롱 예방 제69조 (성희롱의 예방 및 조치) ① 시설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시설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모든 직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시설장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 처리를 위하여 남녀 동수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변경]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의 의무사항 반영

「인사·복무규정」 개정(안) 본문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2장 인사위원회	제2장 인사위원회	
제15장 직무교육 및 안전보건	제14장 직무교육 및 안전보건	
제70조 (직무교육) ① 시설은 관계법에서 지정하는 직원의 직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제1항의 교육과 별도로 전문성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직원에게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일정은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③ 직무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교육 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교육의 소요경비는 시설에서 부담하며, 출장을 요하는 교육의 여비는 여비지침에 의한다. ④ 외부교육에 참가하고자 하는 직원은 관련교육 이수계획서를 제출하고, <u>교육사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제70조 (직무교육) ① 시설은 관계법에서 지정하는 직원의 직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③ 변동 없음. ④ 외부교육에 참가하고자 하는 직원은 관련교육 이수계획서를 제출하고, <u>교육 후에는 결과보고서 또는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u>	[변경] ■ 직무교육 참여에 대한 직원의 의무사항 강조하고 교육 후 교육결과보고서 또는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1항과 4항 내용 변경
제16장 근무평가 및 복리후생	제16장 근무평가 및 복리후생	
제80조 (복리후생) 시설장은 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보건, 휴가,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근무평가 및 복리후생 지침」에 따른다.	제80조 (복리후생) ① 시설장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명절 선물 제공(신설) 2. 직원들의 근무복 제공(신설) 3. 직원들의 업무에 필요한 용품 제공(신설) 4. 국내 또는 해외 연수 제공(신설) 5. 의료비 지원, 직원단체 상해보험 제공(신설) 6. 직원의 사기 증진을 위한 워크숍 제공(신설) 7. 기타 직원의 제안제도에 따라 채택된 내용(신설) ② 제1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근무평가 및 복리후생 지침」에 따른다. (신설)	[변경·추가] ■ 복리후생의 범위 구체화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제2장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제2장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제2장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제2장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제6조 (운영위원의 의무)	제6조 (운영위원의 의무)	[변경]
<p>① 운영위원은 본 회의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운영위원은 본 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설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p> <p>③ 운영위원은 당해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p> <p>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시설 및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①~③ 변동 없음.</p> <p>④ 운영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반영
제3장 회의	제3장 회의	
제7조 (회의)	제7조 (회의 종류와 개최시기)	[변경·추가]
<p>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p> <p>1. 정기회의(분기 1회)</p> <p>2. 위원장 또는 시설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p> <p>3.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p> <p>③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 국외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무를 직무대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권을 할 수 있다.</p>	<p>①~④ 변동 없음.</p> <p>⑤ 회의는 대면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와 같은 전자적 회의도 가능하다.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신설) 2. 참여자가 운영위원회 위원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신설) 3.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 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함(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제목 수정 ■ 제5항 내용 신설 추가 <p>『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 27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관련> 근거</p>

「재무·회계 규정」 개정(안) 본문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제2장 예산	제2장 예산	
제12조 (예비비)	제12조 (예비비)	[추가]

「재무·회계 규정」 개정(안) 본문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시설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p>① 시설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p> <p>②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p>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1항의 3. (예비비 사용조서) 반영
제16조 (특정목적사업예산)	제16조 (특정목적사업예산)	[추가]
<p>① 시설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p> <p>②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은 관할 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관할 구청에서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다면 예산을 제출할 때 적립금의 적립 사용 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보고하고, 사용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동 보고를 하여야 한다.</p> <p>④ 적립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p>	<p>①~③ 변동 없음.</p> <p>④ 적립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p>	<p>■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제3항 개정사항 반영</p>
제6장 후원금	제6장 후원금의 관리	[변경]
제39조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p>①~② 변동 없음.</p> <p>③ 제2항에 따른 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p>	<p>■ 장 제목 수정</p> <p>■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장의2(후원금의 관리)와 동일하게 변경</p>
제39조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추가]	<p>■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p>
<p>① 시설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설장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p>		

「재무·회계 규정」 개정(안) 본문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한 이후 20일 이내 3개월 동안 시설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항 반영
제42조 (사무의 인계·인수)	제42조 (사무의 인계·인수)	[변경]
<p>①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 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p> <p>②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 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① 변동 없음.</p> <p>②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 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3조(사무의 인계·인수) 2항 반영

[의안 보고를 마치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3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란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3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정으로 제3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 노인복지시설 「공통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4호 의안 : 법인 산하 직영 장애인복지시설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폐지 및 설치 예정일 변경(안) 승인 요청 건 심의

◎ 의장 정진호 : 제4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 장애인복지시설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폐지 및 설치 예정일 변경(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원호 부회장신부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 부회장 김원호 : 제4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 장애인복지시설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폐지 및 설치 예정일 변경(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시설폐지 및 설치 예정일 변경」 관련 (안)

▣ 시설 개요

시 설 명	나자로의집 보호작업장		
소 재 지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4길 81		
시 설 규 모	200.63㎡(지하 1층, 지상 2층)	이 용 장 애 인 수	18명
종 사 자 수	5명	장 애 유 형	지적장애 12명 자폐성장애 6명
종사자 성별현황	남 3명 / 여 2명	이용장애인성별현황	남 13명 / 여 5명
수 익 사 업	임가공(문구류 포장), 소매유통(스마트스토어 운영), 소품 수제작(면지갑, 면가방)		

▣ 시설폐지 및 설치 예정일 변경의 요청 사유

지난 2023년 제4차 임시이사회(회의개최일 2023년 12월 20일)에서 “나자로의집 보호작업장 시설폐지 및 시설설치” 의안에 대한 승인에 따라 차질없이 일정을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이하의 사유로 시설폐지 일자 및 시설설치 예정 일자를 변경하고자 함.

1. 기존에 설정된 예정일은 공사기간 연장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초기 계획에 근거하고 있어서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폐지 일자를 조정하고자 함.

⇒ 공사 시공업체의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지연되었고,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 사항이나 추가 작업이 예상보다 많아져 기간이 연장됨.

* 관련 건은 ‘서울특별시’ 및 ‘관악구청(시설폐지에 따른 보조금 정산)’과 ‘구로구청(시설설치에 따른 보조금 신청)’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과정이 포함되었으며 본 이사회의 의안 승인 시, 시설폐지 및 시설설치 예정일 변경(안)을 기반으로 관할 지자체의 보조금 정산 및 지원 일체의 절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 시설폐지 및 시설설치 변경(안)

시설폐지 신고일	변 경 전	2024년 3월 31일	⇒	변 경 후	2024년 6월 17일
시설설치 신고일	변 경 전	2024년 4월 1일		변 경 후	2024년 6월 18일

[의안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4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4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4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 장애인복지시설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폐지 및 설치 예정일 변경(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5호 의안 : 법인 산하 직영·수탁 영·유아복지시설 「2023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건 심의

◎ 의장 정진호 : 제5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 「영·유아복지시설 2023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원호 부회장신부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 부회장 김원호 : 제5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 「영·유아복지시설 2023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요청해 온 시설은 총8개 시설로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을 요청해 온 2개 시설과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요청해 온 6개 시설이다. 관련하여 해당 의안은 사회복지팀 영·유아복지 담당의 1차 검토와 법인 회계담당관의 2차 검토, 최종적으로 심점심 이사님과 법인 감사님의 3차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순차적으로 2023년 제2차,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임원분들께서는 「2024년 정기이사회 자료집」(이하, '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참고] 총 8개 시설	직영 수탁 영·유아복지시설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총 2개 시설 직영 수탁 영·유아복지시설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총 6개 시설
-------------------	---

◎ 부회장 김원호 : 먼저, 2023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해 온 법인 산하 2개 시설 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자료집」을 참조하여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임원분들께서는 해당 시설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분야	구분	시설명	세 입				세 출				면
			2023년1차 추경예산(A)	2023년2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증감(B-A) %	2023년1차 추경예산(A)	2023년2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증감(B-A) %	
영유아 (2개)	수탁 송화어린이집	442,380	446,110	3,730	0.8	442,380	446,110	3,730	0.8	11	
	직영 프란치스코어린이집	1,656,865	1,628,695	-28,170	-1.7	1,656,865	1,628,695	-28,170	-1.7	12	

◎ 부회장 김원호 : 다음은, 2023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해 온 법인 산하 6개 시설 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자료집」을 참조하여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임원분들께서는 해당 시설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 입				세 출				면	
			2023년2차 추경예산(A)		2023년3차 추경예산(B)		증감(B-A)		2023년2차 추경예산(A)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영유아 (671)	수탁방 배어린이집	503,089	506,155	3,066	0.6	503,089	506,155	3,066	0.6	15		
	직영 베들레헴어린이집	385,339	451,752	66,413	17.2	385,339	451,752	66,413	17.2	16		
	수탁성모어린이집	421,151	411,431	-9,720	-2.3	421,151	411,431	-9,720	-2.3	17		
	수탁 <small>예다움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small>	577,956	562,006	-15,950	-2.8	577,956	562,006	-15,950	-2.8	18		
	수탁한빛어린이집	699,187	662,160	-37,027	-5.3	699,187	662,160	-37,027	-5.3	19		
	수탁해뜨락어린이집	419,104	405,387	-13,717	-3.3	419,104	405,387	-13,717	-3.3	20		

[의안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5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5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정으로 제5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 영·유아복지시설 「2023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6호 의안 :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3년 사업총평가 및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요청 건 심의

◎ 의장 정진호 : 제6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3년 사업총평가 및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원호 부회장신부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 부회장 김원호 : 제6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3년 사업총평가 및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을 요청해 온 법인 외 산하 직영·수탁 총68개 시설로 해당 의안 내용은 사회복지팀의 각 복지 담당(관) 직원의 1차 검토와 법인 재무·회계담당관의 2차 검토, 최종적으로 심점심 이사님과 감사님의 3차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였음을 안내드린다.

해당 내용 중 먼저, 법인사무국의 2023년 사업총평가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이어서 산하 직영·수탁시설 68개 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임원분들께서는 해당 시설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 입				세 출				면
			2023년 예산(A)	2023년 결산(B)	잔액(A-B)	집행율(%)	2023년 예산(A)	2023년 결산(B)	잔액(A-B)	집행율(%)	
별 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10,258,521	10,386,930	-128,409	101.3	10,258,521	10,386,930	-128,409	101.3	29	
종합 (7개)	수탁 동작종합사회복지관	1,928,954	1,916,012	12,942	99.3	1,928,954	1,916,012	12,942	99.3	45	
	수탁 동촌7종합사회복지관 의부설기관	2,898,760	2,914,010	-15,250	100.5	2,898,760	2,914,010	-15,250	100.5	55	
	수탁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의부설기관	4,207,189	4,184,261	22,928	99.5	4,207,189	4,184,261	22,928	99.5	65	
	수탁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338,714	2,288,468	50,246	97.9	2,338,714	2,288,468	50,246	97.9	78	
	수탁 유락종합사회복지관	4,880,000	4,812,564	67,436	98.6	4,880,000	4,812,564	67,436	98.6	87	
	수탁 중곡종합사회복지관	2,266,550	2,231,359	35,191	98.4	2,266,550	2,231,359	35,191	98.4	96	
	수탁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의부설기관	4,675,060	4,616,673	58,387	98.8	4,675,060	4,616,673	58,387	98.8	105	
아동 (4개)	직영 마고네지역아동센터	150,844	170,127	-19,283	112.8	150,844	170,127	-19,283	112.8	119	
	직영 셋별지역아동센터	159,350	159,222	128	99.9	159,350	159,222	128	99.9	122	
	직영 성가정임양원	2,546,307	2,692,425	-146,118	105.7	2,546,307	2,692,425	-146,118	105.7	126	
	직영 우리들의공부방지역아동센터	343,170	333,901	9,269	97.3	343,170	333,901	9,269	97.3	134	
노인 (20개)	수탁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의부설기관	5,391,018	5,346,874	44,142	99.2	5,391,018	5,346,874	44,142	99.2	141	
	수탁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의부설기관	4,414,776	4,395,303	19,473	99.6	4,414,776	4,395,303	19,473	99.6	155	
	직영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3,035,000	3,032,717	2,283	99.9	3,035,000	3,032,717	2,283	99.9	164	
	수탁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의부설기관	4,379,356	4,395,258	-15,902	100.4	4,379,356	4,395,258	-15,902	100.4	174	
	직영 강일성모노인요양원	3,282,166	3,280,676	1,489	100.0	3,282,166	3,280,676	1,489	100.0	184	
	수탁 양천어르신요양센터 의부설기관	3,917,216	3,936,680	-19,464	100.5	3,917,216	3,936,680	-19,464	100.5	190	
	수탁 고덕양로원	2,823,527	2,708,011	115,516	95.9	2,823,527	2,708,011	115,516	95.9	212	
	직영 갈현동성당데이케어센터	465,037	446,674	18,363	96.1	465,037	446,674	18,363	96.1	220	
	직영 고척동성당데이케어센터	550,314	534,068	16,246	97.0	550,314	534,068	16,246	97.0	224	
	직영 구파발성당데이케어센터	723,115	703,445	19,670	97.3	723,115	703,445	19,670	97.3	230	
	직영 금호동성당데이케어센터	524,864	514,759	10,105	98.1	524,864	514,759	10,105	98.1	235	
	직영 상계동성당데이케어센터	546,168	554,430	-8,262	101.5	546,168	554,430	-8,262	101.5	239	
	직영 사릉4동성당데이케어센터	453,745	423,704	30,041	93.4	453,745	423,704	30,041	93.4	244	
	직영 신당동성당데이케어센터	493,257	488,925	4,332	99.1	493,257	488,925	4,332	99.1	251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 입				세 출				면
			2023년 예산(A)	2023년 결산(B)	잔액(A-B)	집행율(%)	2023년 예산(A)	2023년 결산(B)	잔액(A-B)	집행율(%)	
노인직영	신림성모성당데이케어센터	612,525	618,750	-5,225	100.9	612,525	618,750	-5,225	100.9	257	
직영	왕십리성당데이케어센터	615,581	618,401	-2,820	100.5	615,581	618,401	-2,820	100.5	263	
직영	천호동성당데이케어센터	546,116	551,979	-5,863	101.1	546,116	551,979	-5,863	101.1	269	
직영	행운동성당데이케어센터	489,606	486,697	2,909	99.4	489,606	486,697	2,909	99.4	273	
직영	혜화동성당데이케어센터	610,501	614,536	-4,035	100.7	610,501	614,536	-4,035	100.7	280	
직영	화곡동성당데이케어센터	629,976	649,933	-19,957	103.2	629,976	649,933	-19,957	103.2	289	
장애인 (31개)	직영 꿈손장애인단기보호센터	602,259	602,359	-100	100.0	602,259	602,359	-100	100.0	297	
	직영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437,381	440,165	-2,784	100.6	437,381	440,165	-2,784	100.6	305	
	직영 너울자리공동생활가정	147,740	147,741	-1	100.0	147,740	147,741	-1	100.0	314	
	직영 다사랑공동생활가정	92,560	92,555	5	100.0	92,560	92,555	5	100.0	322	
	직영 다향 공동 생활 가 정	62,431	61,965	466	99.3	62,431	61,965	466	99.3	326	
	직영 디딤자리	2,468,682	2,513,891	-45,209	101.8	2,468,682	2,513,891	-45,209	101.8	328	
	직영 투치아공동생활가정	81,587	81,638	-51	100.1	81,587	81,638	-51	100.1	337	
	직영 마로니에공동생활가정	135,592	137,545	-1,953	101.4	135,592	137,545	-1,953	101.4	341	
	직영 바오로교실보호작업장	450,762	458,514	-7,752	101.7	450,762	458,514	-7,752	101.7	344	
	직영 바오로교실주간보호시설	335,364	335,682	-318	100.1	335,364	335,682	-318	100.1	348	
	직영 보금자리공동생활가정	95,845	95,845	0	100.0	95,845	95,845	0	100.0	354	
	직영 비둘기주간보호시설	311,198	311,497	-299	100.1	311,198	311,497	-299	100.1	357	
	직영 비둘기직업적용훈련센터	439,625	439,701	-76	100.0	439,625	439,701	-76	100.0	366	
	직영 사랑손주간보호센터	339,000	339,176	-176	100.1	339,000	339,176	-176	100.1	373	
	직영 사랑손직업적용훈련시설	512,735	510,415	2,320	99.5	512,735	510,415	2,320	99.5	381	
수탁	서리풀주간이용센터	325,605	307,947	17,658	94.6	325,605	307,947	17,658	94.6	387	
수탁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1,915,381	1,915,959	-578	100.0	1,915,381	1,915,959	-578	100.0	390	
수탁	서초구립주간이용센터	295,596	296,150	-554	100.2	295,596	296,150	-554	100.2	396	
직영	성빈센트환경마을	1,864,368	2,050,072	-185,704	110.0	1,864,368	2,050,072	-185,704	110.0	400	
직영	성지보호작업장	462,061	475,894	-13,833	-103.0	462,061	475,894	-13,833	-103.0	402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 입				세 출			
			2023년 예산(A)	2023년 결산(B)	전액(A-B)	집행율 (%)	2023년 예산(A)	2023년 결산(B)	전액(A-B)	집행율 (%)
장애인	직영	소라네 공동생활가정	47,483	48,241	242	99.5	47,483	48,241	242	99.5
	직영	신망에의집 단기거주시설	797,746	809,814	-12,068	101.5	797,746	809,814	-12,068	101.5
	직영	연희네 공동생활가정	69,041	69,083	-42	100.1	69,041	69,083	-42	100.1
	직영	하늘자리 공동생활가정	85,559	85,556	3	100.0	85,559	85,556	3	100.0
	직영	햇빛자리	359,904	360,380	-475	100.1	359,904	360,380	-475	100.1
수탁	한우리보호작업장	2,082,000	2,027,714	4,286	99.8	2,082,000	2,027,714	4,286	99.8	
수탁	한우리정보문화센터	4,001,699	4,002,141	-442	100.0	4,001,699	4,002,141	-442	100.0	
	직영	헬렌켈러의집 공동생활가정 1호	123,325	122,665	660	99.5	123,325	122,665	660	99.5
	직영	헬렌켈러의집 공동생활가정 2호	145,716	145,637	79	99.9	145,716	145,637	79	99.9
	직영	헬렌켈러의집 단기거주시설	719,226	720,201	-975	100.1	719,226	720,201	-975	100.1
	직영	헬렌켈러의집 주간보호시설	282,400	282,571	-171	100.1	282,400	282,571	-171	100.1
여성(4개)	직영	마음자리	1,029,336	1,062,944	-33,608	103.3	1,029,336	1,062,944	-33,608	103.3
	직영	벗들의집	564,681	562,108	2,573	99.5	564,681	562,108	2,573	99.5
	직영	사랑의집	349,596	349,526	70	100.0	349,596	349,526	70	100.0
	직영	화해의집쉼자리	608,151	608,943	-792	100.1	608,151	608,943	-792	100.1
노숙인(2개)	직영	가톨릭사랑평화의집	455,627	441,902	13,725	97.0	455,627	441,902	13,725	97.0
	직영	우리자공동체	167,571	166,876	695	99.6	167,571	166,876	695	99.6

[의안 보고를 마치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6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6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6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3년 사업총평가 및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또한, 임원진은 지난 1년간 지역사회 곳곳에서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각 복지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친 직영·수탁 68개 시설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더불어 사업평가 시 미진했던 부분을 쇄신하여 금년

사업에 반영하므로 사회적약자를 위한 교회 내 사회복지시설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다.

■ 제7호 의안 : 법인 산하 직영·수탁 영·유아복지시설 「2024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안) 승인 요청 건 심의

◎ 의장 정진호 : 제7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 영·유아복지시설 「2024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원호 부회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 부회장 김원호 : 제7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 영·유아복지시설 「2024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 온 직영·수탁시설은 총8개 시설로 해당 내용은 사회복지팀의 각 복지 담당(관) 직원의 1차 검토와 법인 재무·회계담당관의 2차 검토, 최종적으로 심점심 이사님과 감사님의 3차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였음을 안내드린다.

이하, 총8개 시설 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임원분들께서는 해당 시설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참고] 영·유아복지시설 : 어린이집 회계기간 “3월~의년 2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19조 제1항의 근거하여 시설 이용자 확정이 3월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 연도를 변경하여 회계 명확성을 도모함.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 입				세 출				면
			2023년 추경예산(A)	2024년 예산액(B)	증감 (B-A)	비율 (%)	2023년 추경예산(A)	2024년 예산액(B)	증감 (B-A)	비율 (%)	
영유아 (8개)	수탁	방 배 어 린 이 집	506,155	544,048	37,893	7.5	506,155	544,048	37,893	7.5	511
	직영	메들리행 어린이집	451,752	440,900	-10,852	-2.4	451,752	440,900	-10,852	-2.4	515
	수탁	성 모 어 린 이 집	411,431	424,796	13,365	3.2	411,431	424,796	13,365	3.2	518
	수탁	송 화 어 린 이 집	446,110	414,746	-31,364	-7.0	446,110	414,746	-31,364	-7.0	522
	수탁	예다움보듬이나눔이 어 린 이 집	562,006	561,576	-430	-0.1	562,006	561,576	-430	-0.1	525
	직영	프란치스코어린이집	1,628,695	1,719,780	91,085	5.6	1,628,695	1,719,780	91,085	5.6	530
	수탁	한 빛 어 린 이 집	662,160	729,312	67,152	10.1	662,160	729,312	67,152	10.1	534
	수탁	해 뜨락 어 린 이 집	405,387	377,384	-28,003	-6.9	405,387	377,384	-28,003	-6.9	537

[의안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7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7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임원진은 해당 8개 시설에서 차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목적한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정으로 제7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 영·유아복지시설 「2024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8호 의안 :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4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건 심의

◎ 의장 정진호 : 제8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4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원호 부회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 부회장 김원호 : 제8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4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요청해 온 법인과 산하 직영·수탁 총47개 시설로 본 내용 또한 사회복지팀 영·유아복지 담당의 1차 검토와 법인 재무·회계담당관의 2차 검토, 최종적으로 심점섭 이사님과 감사님의 3차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순차적으로 법인사무국 자료 보고 후, 산하 직영·수탁시설 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임원분들께서는 먼저 법인사무국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 입				세 출				면
			2024년 예산(A)	2024년 1차 추경예산(B)	증감(B-A)		2024년 예산(A)	2024년 1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			금액	%			
법인	인	서울기쁨리사회복지회	9,224,180	11,019,114	1,794,934	19.5	9,224,180	11,019,114	1,794,934	19.5	549
종합 (3개)	수탁	동작종합사회복지관	1,862,533	1,905,841	43,308	2.3	1,862,533	1,905,841	43,308	2.3	550
	수탁	동촌7종합사회복지관 의부설기관	2,805,190	3,029,120	223,930	8.0	2,805,190	3,029,120	223,930	8.0	551
	수탁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의부설기관	4,170,427	4,326,930	156,503	3.8	4,170,427	4,326,930	156,503	3.8	555
아동 (2개)	직영	마고네지역아동센터	143,422	156,568	13,146	9.2	143,422	156,568	13,146	9.2	558
	직영	성가정입양원	2,398,770	2,682,862	284,092	11.8	2,398,770	2,682,862	284,092	11.8	559
노인 (15개)	수탁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의부설기관	5,229,089	5,577,153	348,064	6.7	5,229,089	5,577,153	348,064	6.7	560
	수탁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의부설기관	4,221,990	4,468,767	246,777	5.8	4,221,990	4,468,767	246,777	5.8	563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 입				세 출				면
			2024년 예산(A)	2024년 1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	2024년 예산(A)	2024년 1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	
노인	직영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3,031,000	3,102,000	71,000	2.3	3,031,000	3,102,000	71,000	2.3	566
	수탁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외부설기관	5,192,824	5,470,786	277,963	5.4	5,192,824	5,470,786	277,963	5.4	567
	수탁	양천어르신요양센터 외부설기관	3,947,831	4,052,680	104,849	2.7	3,947,831	4,052,680	104,849	2.7	570
	수탁	고덕양로원	2,750,512	2,819,397	68,885	2.5	2,750,512	2,819,397	68,885	2.5	573
	직영	구파발성당데이케어센터	730,092	799,053	68,961	9.4	730,092	799,053	68,961	9.4	574
	직영	금호동성당데이케어센터	529,814	533,306	3,492	0.7	529,814	533,306	3,492	0.7	575
	직영	상계동성당데이케어센터	542,731	620,032	77,301	14.2	542,731	620,032	77,301	14.2	577
	직영	시흥4동성당데이케어센터	480,271	506,982	26,711	5.6	480,271	506,982	26,711	5.6	578
	직영	신당동성당데이케어센터	501,092	527,896	26,804	5.3	501,092	527,896	26,804	5.3	579
	직영	천호동성당데이케어센터	564,455	592,665	28,210	5.0	564,455	592,665	28,210	5.0	580
	직영	행운동성당데이케어센터	497,259	531,706	34,447	6.9	497,259	531,706	34,447	6.9	581
	직영	혜화동성당데이케어센터	641,898	690,443	48,545	7.6	641,898	690,443	48,545	7.6	583
	직영	화곡동성당데이케어센터	614,451	690,028	75,577	12.3	614,451	690,028	75,577	12.3	584
장애인 (237)	직영	꿈손장애인단기보호센터	595,623	623,949	28,326	4.8	595,623	623,949	28,326	4.8	585
	직영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434,237	447,005	12,768	2.9	434,237	447,005	12,768	2.9	586
	직영	너울자리공동생활가정	152,585	157,627	5,042	3.3	152,585	157,627	5,042	3.3	587
	직영	다사랑공동생활가정	90,139	93,135	2,996	3.3	90,139	93,135	2,996	3.3	588
	직영	다향공동생활가정	68,500	78,700	10,200	14.9	68,500	78,700	10,200	14.9	589
	직영	투치아공동생활가정	81,729	84,969	3,240	4.0	81,729	84,969	3,240	4.0	590
	직영	바오로교실보호작업장	422,145	482,131	59,986	14.2	422,145	482,131	59,986	14.2	591
	직영	바오로교실주간보호시설	364,745	368,562	3,817	1.0	364,745	368,562	3,817	1.0	592
	직영	보금자리공동생활가정	87,307	100,765	13,458	15.4	87,307	100,765	13,458	15.4	593
	직영	비둘기주간보호시설	337,774	355,216	17,442	5.2	337,774	355,216	17,442	5.2	594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 입				세 출				면
			2024년 예산(A)	2024년 1차 추경예산(B)	증감(B-A)	%	2024년 예산(A)	2024년 1차 추경예산(B)	증감(B-A)	%	
장애인	직영	사랑손주간보호센터	326,000	346,340	20,340	6.2	326,000	346,340	20,340	6.2	595
	직영	사랑손직업적용훈련시설	504,682	527,601	22,919	4.5	504,682	527,601	22,919	4.5	596
	수탁	서리풀주간이용센터	326,658	313,980	-12,678	-3.9	326,658	313,980	-12,678	-3.9	597
	수탁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1,855,030	1,901,833	46,803	2.5	1,855,030	1,901,833	46,803	2.5	598
	수탁	서초구립주간이용센터	321,348	327,767	6,419	2.0	321,348	327,767	6,419	2.0	599
	직영	하늘자리공동생활가정	86,616	89,828	3,212	3.7	86,616	89,828	3,212	3.7	600
	수탁	한우리보호작업장	2,040,000	2,104,700	64,700	3.2	2,040,000	2,104,700	64,700	3.2	601
	수탁	한우리정보문화센터	4,088,303	4,171,759	83,456	2.0	4,088,303	4,171,759	83,456	2.0	602
	직영	햇빛자리	372,995	378,335	5,340	1.4	372,995	378,335	5,340	1.4	603
	직영	헬렌켈러의집 공동생활가정 1호	110,195	121,702	11,507	10.4	110,195	121,702	11,507	10.4	604
	직영	헬렌켈러의집 공동생활가정 2호	144,353	148,000	3,647	2.5	144,353	148,000	3,647	2.5	605
	직영	헬렌켈러의집 단기거주시설	724,204	757,471	33,267	4.6	724,204	757,471	33,267	4.6	606
	직영	헬렌켈러의집 주간보호시설	340,060	361,300	21,240	6.2	340,060	361,300	21,240	6.2	607
여성 (3개)	직영	마음자리	991,367	1,145,910	154,543	15.6	991,367	1,145,910	154,543	15.6	608
	직영	사랑의집	325,127	341,204	16,077	4.9	325,127	341,204	16,077	4.9	609
	직영	화해의집 쉼자리	597,123	613,170	16,047	2.7	597,123	613,170	16,047	2.7	610
노숙인 (1개)	직영	우리집공동체	151,468	155,071	3,603	2.4	151,468	155,071	3,603	2.4	611

[의안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8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8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정으로 제8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4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9호 의안 :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적격자 선정(안) 승(추)인 요청 건 심의

◎ 의장 정진호 : 제9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적격자 선정(안) 승(추)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원호 부회장신부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 부회장 김원호 : 제9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적격자 선정(안) 승(추)인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분야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변경 사항				비고	
			면(免)		최종 적격자 선정			
			종료일	성명	시작일	성명		
[수탁] 종합 복지관	상계종합 사회복지관 (상계테마케어센터 상계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노원구 덕릉로	2024.02.12	김호	2024.02.13	신선	자료부록	
[직영] 장애인	디딤자리	강북구 덕릉로	2024.02.29.	박화	2024.03.01.	전미		
	바오로교실 주간보호시설	은평구 증산로	2024.02.29.	한미	2024.03.01.	한미		

분야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변경 사항				비고	
			면(免)		최종 적격자 선정			
			종료일	성명	시작일	성명		
[직영] 여성	1	비공개 시설	2024.02.29.	전_덕	2024.03.01.	김_숙		
[직영] 영유아	베어 런 테이블	성북구 창경궁로	2024.02.29.	신_영	2024.03.01.	이_영		

【참조】 별임1. 시설장 적격자 이력서 40면~44면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9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요청하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9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적격자 선정(안) 승(추)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의장은 그간 시설 운영을 위해 헌신해주신 전임 시설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 바란다는 말씀과 더불어 신임 시설장님들에게 축하 말씀을 전하시며 법인사무국은 신임 시설장님들이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다.

■ 제10호 의안 : 법인 「임원」 -이사, 감사- 선임(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정진호 : 제10호 의안은 법인 「임원」 -이사, 감사- 선임(안) 승인 요청 건으로 본 의안의 당사자인 김_주 이사님과 김_석 감사님은 각 심의·의결 절차 시 잠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란다. (※ 임원 선임(안)에 해당되는 당사자 임원은 심의 시에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의안 승인 가결 후, 회의장에 재입장함.)

[김_주 이사, 회의장에서 퇴장하다.]

김원호 부회장은 본 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 부회장 김원호 : 제10호 의안인 법인 「임원」 -이사, 감사- 선임(안) 승인 요청 건으로 김영주 이사님과

김석 감사님에 대한 선임(안)에 대한 이사회 승인 요청 사안이다. 먼저 김 주 이사님에 대한 선임(안) 심의·의결 후, 김석 감사님에 선임(안)을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본 회 외부 추천 이사로 계신 김 주 이사님의 임기가 오는 2024년 7월 23일자로 만료 예정이다. 이에, 본 회 외부추천 이사 3인 중 1인의 외부추천 이사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임원, 제2항에 근거하여 관할 주무관청(중구청)을 통하여 본 회 현 외부 추천 이사에 대하여 재추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재추천 요청이 승인되어 김 주 이사님을 포함한 총 3인의 외부 이사 후보자를 추천 받았음을 보고드린다. (※ 재추천 요청사유: 법인과 산하 다수의 직영·수탁시설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노무 관련 사건·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적법한 대처·대응 가능)

이에,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2024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임기만료 외부추천 이사 현황		
성명 (나이 / 성별)	임기 (만료일)	사유
김 주 (41 / 남)	2021년 7월 23일 ~ 2024년 7월 23일 (3년)	■ 임기 만료 예정

※ 이하, 외부이사 후보자 3인에 대한 약력 소개 자료 참조.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이사 후보 3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	주요경력	최종학력 / 학과명	비고
김 주 (41 / 남)	공인노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법인 천지 대표(現) ■ 우리노무법인 책임노무사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균관대학교 / 법학과 학사 	
온숙 (41 / 여)	사회복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장 ■ 대방종합사회복지관장 ■ 동방사회복지회 사무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학 석사 	
오일 (41 / 남)	사회복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주교 서울대교구 길음동성당 주임(現) ■ 신당종합사회복지관장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톨릭대학교 / 사회복지학 석사 	

※ 근거법 : 「사회복지사업법」 외부이사 선임 관련 발췌

제18조 (임원)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26., 2017.10.24.>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조】 별첨2.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문 복지정책과-2904(제목: 사회복지법인 서울기틀리사회복지회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추천 통보 45면)

[의안 보고를 마친다.]

◎ 의장 정진호 : 임원분들께서는 이사 선임(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란다.

의장은 출석이사에게 이사 선임(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6명, 당사자 제외)의 동의와 재정으로 김영주 이사의 선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김영주 이사, 회의장에 입장하다.]

이어서, 의장은 지난 3년 동안 법인의 바른 운영을 위해 고견을 주신 김¹ 주 이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향후 3년 동안 지금과 같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이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의장 정진호 : 다음은, 법인 감사 임기만료에 따른 선임(안)으로 김원호 부회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 임원 선임(안)에 해당되는 당사자 임원은 심의 시에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의안 승인 가결 후, 회의장에 재입장함.)

[김한석 감사, 회의장에서 퇴장하다.]

김원호 부회장은 본 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 부회장 김원호: 김¹석 감사의 임기가 오는 5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선임을 요청드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 감사 선임(안) -임기 만료에 따른-

감사 성명	비고
김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現 천주교 서울대교구 관리국장■ 재단법인 한국중독연구재단 사무총장■ 카프성모병원 사무총장 <p>※ 「감사」 예정 임기: 2024년 5월 18일 ~ 향후 2년</p>

【근거】 법인「정관」 제3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선임 등)

【정관】 제3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선임 등) 제1항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제1항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보선된 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개시된다.

[의안 보고를 마친다.]

◎ 의장 정진호 : 임원분들께서는 감사 선임(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란다.

의장은 출석이사에게 감사 선임(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7명)의 동의와 재정으로 김한석 감사의 선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김한석 감사, 회의장에 입장하다.]

이어서,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법인 감사 직무수행을 통해 바른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 김 석 감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향후 2년 동안 지금과 같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이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보고 및 기타토의

마지막 순서로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법인 운영 관련하여 특이 보고사항이 없음을 안내하다.

의장은 금번 2024년 정기이사회(총205차)에 상정된 총10개 의안,

[제1호 의안] 법인 「감사보고서」 승인 요청의 건과 [제2호 의안] 법인 「정관」 변경(안)-법인 직영 “카페 생 마리 Cafe. St. MARY”사업운영- 승인 요청의 건, [제3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수탁 노인복지시설 「공통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의 건, [제4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 장애인복지시설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폐지 및 설치 예정일 변경(안) 승인 요청의 건, [제5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수탁 영·유아복지시설 「2023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6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3년 사업 총평가 및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7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수탁 영·유아복지시설 「2024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8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4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9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적격자 선정(안) 승(주)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 임원진의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10호 의안] 법인 「임원-이사, 감사- 선임(안) 승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 임원진의 심의를 통해 김 주 이사와 김 석 감사를 각각 선임하다.

이후, 다른 의견이 없어 참석해 주신 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마침기도로 영광송을 바치고 폐회를 선언하다.

【안내】 2024년 제1차 임시이사회 예정일 → 5월 21일(화) 16:00 서울대교구청 별관1층 대회의실

상기 의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 임원 전원 기명날인하여 보관하다.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상임이사
(직무대행자)

정 진 호



이 사 심 절 성



이 사 오 혜 경



이 사 전 재 회



이 사 김 명 근



이 사 정 태 호



이 사 김 영 주



감 사 김 한 보



감 사 오 윤 속

